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및 노동위원회에 송무 수행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실업급여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에 필요한 인력 68명(6급 10명, 7급 27명, 8급 3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유해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9명(5급 1명, 6급 4명, 7급 4명) 중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1명(7급 1명)은 감축하고, 8명(5급 1명, 6급 4명, 7급 3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근로감독정책단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근로감독정책단에 두었던 근로감독기획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근로감독정책단에 두었던 한시정원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중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감축하며, 7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고용노동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64명(6급 14명, 7급 20명, 8급 13명, 9급 17명) 및 노동위원회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0. 00.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의 일자리정책평가과를 폐지하고 기업일자리지원과를 신설하며, 관련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의 효율적 인력 운영과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고용센터 소장직에 상담직 공무원을 보임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명(7급 2명)을 감축하고, 고용행정부데이터 심층 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기제 공무원 정원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1. 28. ~ 1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고용정책총괄과·지역산업고용정책과·일자리정책평가과·고용서비스정책과·고용보험기획과·고용지원실업급여과·자산운용팀·국민취업지원기획팀·고용서비스기반과·고용문화개선정책과·미래고용분석”을 “고용정책총괄과·지역산업고용정책과·기업일자리지원과·고용서비스정책과·고용보험기획과·고용지원실업급여과·자산운용팀·국민취업지원기획팀·고용서비스기반과·고용문화개선정책과·미래고용분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제20호 및 제2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고용영향평가 및 조정, 관리에 관한 사항

17.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의 지정·관리 등 고용영향평가 인프라에 관한 사항

18. 정부 각 부처의 고용정책 모니터링

19. 고용형태 공시제의 운영

제6조제9항에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산업·일자리전환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21. 산업·일자리전환과 관련된 정책의 총괄·조정

22. 산업·일자리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장려금 및 지원금 사업의 운영

23.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등 탄소중립기본법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총괄

제6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정책평가과장”을 “기업일자리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제5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업일자리 지원 정책 총괄

2. 고용보험사업 중 고용안정제도의 통합 및 총괄·운영

3. 고용창출 및 고용조정의 지원을 위한 장려금 및 지원금 사업의 운영

4.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용지원제도의 운영

5. 고용장려금 운영 전반에 대한 조정

9. 일자리창출 유공 포상,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및 운영

제7조제6항 중 “노사협력정책과·노사관계법제과·노사관계지원과·근로기준정책과·퇴직연금복지과·고용차별개선과·공무원노사관계”를 “노사협력정책과·노사관계법제과·노사관계지원과·근로기준정책과

· 근로감독기획과 · 퇴직연금복지과 · 고용차별개선과 · 공무원노사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근로감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 근로감독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근로감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사업장 근로감독의 총괄 · 조정 및 지원
4.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근로기준법」 등 근로기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6.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 · 홍보 및 지원
7. 고용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8.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9. 근로감독 인프라의 구축 · 운영 및 정보화 자원 관리
10. 체불임금 관리 및 청산대책의 수립 · 시행
11. 사업장의 근로기준 준수여부 조사 · 감독
12. 근로기준분야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13. 그 밖에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4조제2항 본문 중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를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로”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를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고용센터 소장에 한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4명(7급 4명)”을 “3명(7급 3명)”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별표 5 중 총계 “618”을 “624”로 하고, 일반직 계 “611”을 “617”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4”를 “35”로 하고, 행정사무관 “114”를 “117”로 하며,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7”을 “46”으로 하고, 행정주사 “63”을 “64”로 하며, 행정주사 · 통계주사 · 직업상담주사 · 공업주사 · 보건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30”을 “31”로 하고, 공업주사 · 보건주사 또는 시설주사 “12”를 “11”로 하며, 행정주사보 “60”을 “61”로 하고,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직업상담주사보 ·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5”를 “36”으로 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중 총계 “637”을 “642”로 하고, 일반직 계 “630”을 “635”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5”를 “3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134”를 “137”로 하며,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7”을 “46”으로 하고, 행정주사 “57”을 “58”로 하

며, 행정주사·통계주사·직업상담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30”을 “31”로 하고,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시설주사 “12”를 “11”로 하며, 행정주사보 “53”을 “54”로 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693”을 각각 “6,696”으로 하고, 행정주사 “975”를 “963”으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158”을 “168”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43”을 “241”로 하며, 행정주사보 “1,126”을 “1,111”로 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406”을 “432”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30”을 “325”로 하고, 행정서기 “409”를 “399”로 하며,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632”를 “661”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통계서기 “26”을 “25”로 하며, 행정서기보 “113”을 “111”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869”를 “854”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683”을 각각 “6,686”으로 하고, 행정주사 “827”을 “815”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158”을 “168”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41”을 “239”로 하며, 행정주사보 “1,025”를 “1,010”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406”을 “432”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33”을 “328”로 하고, 행정서기 “507”을 “497”로 하며,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632”를 “661”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통계서기 “25”를 “24”로 하며, 행정서기보 “205”를 “2

03”으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869”를 “854”로 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8 제1호나목1)의 정원의 평가기간란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목 4)(중전의 5))의 정원의 평가기간란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목 7)(중전의 8))의 정원의 평가기간란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목 8)(중전의 9))의 정원의 평가기간란 및 같은 목 9)(중전의 10))의 정원의 평가기간란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목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 운영(지방 고용노동관서)	68명 (6급 10명, 7급 27명, 8급 3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별표 19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제7조제6항, 제7조제12항, 제27조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5,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202

3년 1월 31일까지는 별표 5의2, 별표 6의2를 적용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직업상담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은 2025년 12월 12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노동부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2명)과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의 정원 64명(6급 14명, 7급 20명, 8급 13명, 9급 17명) 및 노동위원회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5의2]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고용노동부령 제00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관련)

총계	617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5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장관정책보좌관(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1
청년정책 담당(6급 상당)	1
비서(6급 상당)	2
일반직 계	610
고위공무원단	1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1
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4
임기제 서기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9
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0
행정사무관	115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6
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6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1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전산사무관	4
통계사무관	4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
행정주사	62
행정주사·통계주사·직업상담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31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7
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7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4
직업상담주사	1
전산주사	10
통계주사	4
통계주사 또는 전산주사	2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시설주사	11
운전주사	1
행정주사보	59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직업상담주사보·공업주사보· 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6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5
행정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
직업상담주사보	2
전산주사보	4
통계주사보	6
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3
행정서기	1
행정서기·통계서기·직업상담서기 또는 전산서기	3
전산서기	2
행정서기 또는 사서서기	1

운전서기	2
시설연구관	1
기록연구사	1
운전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11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촬영 담당)	1
전문경력관 다군(양성평등정책 담당)	1
전문경력관 라군(비상계획 담당)	1

[별표 6의2]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고용노동부령 제00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관련)

총계	635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5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장관정책보좌관(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1
청년정책 담당(6급 상당)	1
비서(6급 상당)	2
일반직 계	628
고위공무원단	1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0
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5
임기제 서기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6
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0
행정사무관	135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6
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6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2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전산사무관	4
통계사무관	4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
행정주사	56
행정주사·통계주사·직업상담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31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7
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7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4
직업상담주사	1
전산주사	10
통계주사	4
통계주사 또는 전산주사	2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시설주사	11
운전주사	1
행정주사보	52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직업상담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9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5
행정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
직업상담주사보	2
전산주사보	4
통계주사보	6
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3
행정서기	1
행정서기·통계서기·직업상담서기 또는 전산서기	3
전산서기	2
행정서기 또는 사서서기	1

운전서기	2
시설연구관	1
기록연구사	1
운전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11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촬영 담당)	1
전문경력관 다군(양성평등정책 담당)	1
전문경력관 라군(비상계획 담당)	1

비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종전의 고용노동부령 제12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정원 중 환원된 정원을 제외한 이 표의 정원 7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7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사무관 5명 및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으로 본다.

[별표 12]

노동위원회 사무처와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3항 본문 관련)

구 분	계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총계	359	89	270
정무직 계	1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	1	1	
일반직 계	358	88	270
고위공무원단	1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위원장)	12		1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8	2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1
서기관	7	1	6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2	
행정사무관	48	27	21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	2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1	
행정주사	133	26	107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1	

행정주사보	83	11	72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1	
행정서기	20	3	17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	1	
운전서기	1	1	
행정서기보	3		3
방호서기보	2		2
운전서기보	12	1	11
기록연구사	1	1	
사무운영서기보	13	2	11

[별표 13]

노동위원회 사무처와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3항 단서 관련)

구 분	계	중앙노동 위원회	지방노동 위원회
총계	363	93	270
정무직 계	1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	1	1	
일반직 계	362	92	270
고위공무원단	1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위원장)	12		1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8	2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1
서기관	7	1	6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2	
행정사무관	48	27	21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 무관	3	2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1	
행정주사	134	28	106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1	

행정주사보	82	11	71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1	
행정서기	24	4	20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	1	
운전서기	1	1	
행정서기보	5	1	4
방호서기보	2		2
운전서기보	12	1	11
기록연구사	1	1	
사무운영서기보	11	2	9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고용정책실) ① ~ ⑤ (생략)	제6조(고용정책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고용정책실에 <u>고용정책총괄과·지역산업고용정책과·일자리정책평가과·고용서비스정책과·고용보험기획과·고용지원사업급여과·자산운용팀·국민취업지원기획팀·고용서비스기반과·고용문화개선정책과·미래고용분석과</u> 및 노동시장조사과를 둔다.	⑥ ----- <u>고용정책총괄과·지역산업고용정책과·기업일자리지원과·고용서비스정책과·고용보험기획과·고용지원사업급여과·자산운용팀·국민취업지원기획팀·고용서비스기반과·고용문화개선정책과·미래고용분석</u> ----- -----.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⑧ 고용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
1. ~ 15. (생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u>고용보험사업 중 고용안정제도의 통합 및 총괄·운영</u>	16. <u>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고용영향평가 및 조정, 관리에 관한 사항</u>
17. <u>고용창출 및 고용조정의 지원을 위한 장려금 및 지원금 사업의 운영</u>	17. <u>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의 지정·관리 등 고용영향평가 인프라에 관한 사항</u>
18. <u>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용지원제도의 운영</u>	18. <u>정부 각 부처의 고용정책 모니터링</u>
<신설>	19. <u>고용형태 공시제의 운영</u>

19. · 20. (생략)	20. · 21. (현행 제19호 및 제20호와 같음)	체 정책의 고용영향평가(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평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한 고용지원제도의 운영
⑨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5. 고용영향평가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고용장려금 운영 전반에 대한 조정
1. ~ 19. (생략)	1. ~ 19. (현행과 같음)	6. 정부정책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고용친화적 추진을 위한 고용영향평가 과제관리, 모니터링 및 컨설팅	<삭제>
<신설>	20. 산업·일자리전환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7. 정부 각 부처의 고용정책 모니터링	<삭제>
<신설>	21. 산업·일자리전환과 관련된 정책의 총괄·조정	8.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삭제>
<신설>	22. 산업·일자리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장려금 및 지원금 사업의 운영	9.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의 지정·관리 등 고용영향평가 인프라에 관한 사항	9. 일자리창출 유공 포상,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및 운영
<신설>	23.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등 탄소중립기본법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총괄	⑪ ~ ⑲ (생략)	⑪ ~ ⑲ (현행과 같음)
⑩ 일자리정책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기업일자리지원과장-----	제7조(노동정책실) ① ~ ⑤ (생략)	제7조(노동정책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설>	1. 기업일자리 지원 정책 총괄	⑥ 노동정책실에 노사협력정책과·노사관계법제과·노사관계지원과·근로기준정책과·퇴직연금복지과·고용차별개선과·	⑥ ----- 노사협력정책과·노사관계법제과·노사관계지원과·근로기준정책과·근로감독기획과·퇴직연금복지과·
<신설>	2. 고용보험사업 중 고용안정제도의 통합 및 총괄·운영		
<신설>	3. 고용창출 및 고용조정의 지원을 위한 장려금 및 지원금 사업의 운영		
1. ~ 3. (생략)	6. ~ 8.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	4.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		

공무원노사관계과 및 공공기관 노사관계과를 둔다. ⑦ ~ ⑪ (생략) <신설>	고용차별개선과·공무원노사관 계-----. ⑦ ~ ⑪ (현행과 같음) ⑫ 근로감독기획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 근로감독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근로감독 계획의 수 립 및 시행 3. 사업장 근로감독의 총괄·조 정 및 지원 4.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근로기준법」 등 근로기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6.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 준수 를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 7. 고용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8.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 항 9. 근로감독 인프라의 구축·운 영 및 정보화 자원 관리 10. 체불임금 관리 및 청산대책		⑫ ~ ⑮ (생략) 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① (생략) ② 고용센터 소장은 부이사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 관 또는 행정주사로, 지역협력 과장, 고용관리과장, 부정수급 조사과장, 노사상생지원과장,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 근로개 선지도1과장, 근로개선지도2과 장, 근로개선지도3과장, 제주근 로개선지도센터 소장, 광역근로 감독과장,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장, 산재예방지도과장 및 건설 산재지도과장은 서기관·기술 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 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의 수립·시행 11. 사업장의 근로기준 준수여 부 조사·감독 12. 근로기준분야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3. 그 밖에 근로감독에 관한 사 항으로서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⑬ ~ ⑯ (현행 제12항부터 제1 5항까지와 같음) 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부이사관·서 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로-----
---	---	--	--	---

보한다.

② 근로감독정책단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근로감독정책단에 근로감독기획과를 둔다.

④ 근로감독기획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근로감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 근로감독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근로감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사업장 근로감독의 총괄·조정 및 지원

4.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근로기준법」 등 근로기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6.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

7. 고용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8.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9. 근로감독 인프라의 구축·운영 및 정보화 자원 관리

10. 체불임금 관리 및 청산대책의 수립·시행

11. 사업장의 근로기준 준수여부 조사·감독

12. 근로기준분야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3. 그 밖에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삭제

⑦ 근로감독정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9와 같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5]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18	624	+6
일반직 계	611	617	+6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4	35	+1
행정사무관	114	117	+3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 사무관	47	46	-1
행정주사	63	64	+1

행정주사·통계주사·직업 상담주사·공업주사·보 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30	31	+1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시설주사	12	11	-1
행정주사보	60	61	+1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 직업상담주사보·공업주 사보·보건주사보·시설 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5	36	+1

[별표 6]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37	642	+5
일반직 계	630	635	+5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5	36	+1
행정사무관	134	137	+3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 사무관	47	46	-1
행정주사	57	58	+1

행정주사·통계주사·직업 상담주사·공업주사·보 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30	31	+1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시 설주사	12	11	-1
행정주사보	53	54	+1

[별표 10]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
(제24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6,693</u>	<u>6,696</u>	+3
일반직 계	<u>6,693</u>	<u>6,696</u>	+3
·	·	·	
·	·	·	
행정주사	<u>975</u>	<u>963</u>	-12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u>158</u>	<u>168</u>	+10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u>243</u>	<u>241</u>	-2
·	·	·	
·	·	·	
행정주사보	<u>1,126</u>	<u>1,111</u>	-15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u>406</u>	<u>432</u>	+26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330</u>	<u>325</u>	-5
·	·	·	
·	·	·	
행정서기	<u>409</u>	<u>399</u>	-10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u>632</u>	<u>661</u>	+29
·	·	·	
행정서기 또는 통계서기	<u>26</u>	<u>25</u>	-1
·	·	·	
·	·	·	
행정서기보	<u>113</u>	<u>111</u>	-2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u>869</u>	<u>854</u>	-15
·	·	·	
·	·	·	

[별표 11]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

(제24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6,683</u>	<u>6,686</u>	+3
일반직 계	<u>6,683</u>	<u>6,686</u>	+3
·	·	·	
·	·	·	
행정주사	<u>827</u>	<u>815</u>	-12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u>158</u>	<u>168</u>	+10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u>241</u>	<u>239</u>	-2
·	·	·	
·	·	·	
행정주사보	<u>1,025</u>	<u>1,010</u>	-15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u>406</u>	<u>432</u>	+26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333</u>	<u>328</u>	-5
·	·	·	
·	·	·	
행정서기	<u>507</u>	<u>497</u>	-10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u>632</u>	<u>661</u>	+29
·	·	·	
행정서기 또는 통계서기	<u>25</u>	<u>24</u>	-1
·	·	·	
·	·	·	
행정서기보	<u>205</u>	<u>203</u>	-2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u>869</u>	<u>854</u>	-15
·	·	·	
·	·	·	